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규정(안 제6조)
-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규정(안 제8조)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10월 1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2
 - 전자메일 : aragu@korea.kr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8.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항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독·공동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

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4.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가열·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량기기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감량화기기를 구입·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장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업장에서 감량기기 설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1가구 및 1사업장 또는 1시설에 감량기기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총 지원 금액은 가정용 40만원, 사업장 및 시설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대형감량기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와 품질인증서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매 증빙자료를 시장(음식물류 폐기물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및 공동주택 대표자로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는 대표자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보조금 신청에 따른 이행협약서를 시장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결정과 현장 확인이 된 보조금은 교부 결정을 하고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감량기기 구매·설치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반환) ①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을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기도 오산시 (☎:)		
세대주 (대표자)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	상품명		제조사	
	판매점명		감량방식	
	설치장소		설치일시	
보조금 신청내역	구입금액			
	보조금 신청금액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오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구입 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일반가정)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장)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1부. 5.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뒤쪽]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보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거주여부 등)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 관련 업무 한정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구매일자 조작 등)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재신청한 경우
-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중고거래 포함)**
- **설치 사진 등 자료 제출, 설문조사 등 적정 사용에 대한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수급에 따른 위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 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의 [1. 개인정보이용동의, 2. 보조금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매 증빙자료

① 구매영수증	② 설치사진(전경사진)
구매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첨부 (구매금액, 구매일자, 판매점명, 모델명 등이 표기되어야 함)	○ 설 치 일 : 제품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③ 실사용 인증사진	④ 제조 명판 사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사용 모습 (음식물 투입 및 감량 후 사진 등)	제품에 부착된 명판사진 첨부 (모델명, 고유번호 등이 보이도록 촬영)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확인 점검표

I. 일반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구매일자		기기종류	☐ 가열건조방식 ☐ 발효소멸방식
제조사 및 제품명			

II. 확인사항 및 결과

주요확인사항	확인결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인과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 기 신청한 감량기기와의 일치 여부	
○ 감량기기의 정상가동 및 적정사용 여부 (감량 잔재물 확인)	

Ⅲ.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기기 소유자) 성명 (인)

오산시장 귀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보조금
신청에 따른 이행 협약서

☐ 성 명 :

☐ 주 소 :

위 본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함에 있어 오산시 주요 시책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을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하고 이에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량기기를 계속 사용한다.
- 지원받은 감량기기는 중고 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 된다.
-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오산 외 타 지역으로 이사 및 이전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배출된 부산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 점검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리대장

연번	대상	신청일	지급일	신청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감량기기		지급액 (원)	비고
							기기 구입가액 (원)			
							구입 연월일			
							제조사			
							모델명			
							처리방식			
							품질인증			

※ 대상: 가구, 시설 및 단체·공동주택 대표·사업장 표기